

인천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550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AD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형필, 서기원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6. 3.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8가단26124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3,56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2021.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그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삭제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삭제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 3쪽의 각 ‘원고’를 각 ‘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C의 파산선고 및 원고의 소송수계

C는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0050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20. 10. 15.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1. 1. 4.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2021. 3. 19. 부인의 소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제1심판결 제4쪽의 ‘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여부’를 ‘2. 판단’으로 고치고,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의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가.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으로, 제9쪽 제5, 6행의

‘원고’를 ‘A’로 각 고치고, 제9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7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인권 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보아야 한다.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J 주식회사(현 W 주식회사)의 근저당권과 M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매매 후 M의 근저당권이 2016. 4. 6.에, J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2016. 5. 13.에 각각 해지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부인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원고의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1.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2021. 3.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2021. 3. 2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1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제1심 법원의 W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3. W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129,336,240원(= 원금

129,000,000원 + 이자 336,24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4. 6. M의 피담보채무액 17,100,000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63,563,760원(= 210,000,000원 - 129,336,240원 - 1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 다음날인 2021. 3. 23.부터¹⁾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4) 결국,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63,563,760원의 한도에서 부인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소병진, 판사 원용일, 판사 이효인

1)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다43999 판결 등 참조).